

##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·관리 지침 주요 개정 내용

- ◇ 지구온난화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대형재난에 대비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물(교량 등) 안전관리체계 대폭 강화
  - ※ 10년 경과된 시설중 재난예방을 위하여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⇒ 교량 등 주요시설은 10년이상 경과된 모든 시설
- ◇ 재난위험시설(D, E급)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장·단기계획 수립·시행 및 정기점검(관리카드) 업무처리 중복성 등을 개선

### □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·관리현황

-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에 의거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“특정관리대상시설”로 지정·관리

※ 지정·관리주체 : 재난관리책임기관장(소속·산하기관장)

- 특정관리대상시설은 “시특법” 적용을 받는 대규모(1,2종)시설물을 제외한 중소규모 이상의 시설 중 10년 이상(공동주택은 15년 이상) 경과된 시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지정

예시) 교량 현황

중규모(20m이상, 100m 미만) 전체 교량	중규모(20m이상, 100m 미만)으로 10년 이상 경과된 교량	현재 특정관리로 지정된 교량		
		계	중점관리시설(A,B,C등급)	재난위험시설(D,E등급)
5,847개	2,732	265	256	9

- 그러나 재난책임기관별 실제 지정·관리실태는 현저한 차이 발생(\* 2006년 기관별 특정관리대상 지정·관리시설물)

합계	서울청	원주청	대전청	익산청	부산청	도로공사	철도공사	공항공사등
277개 (교량265)	68	173	-	7	17	-	-	12

## □ 주요 개정 내용

### ○ “특정관리대상시설” 지정 대폭 확대

- ▶ 10년 경과된 시설중 재난예방을 위하여 특별관리가 필요한 시설
  - ➡ 교량 등 주요시설은 10년 이상 경과된 모든 시설(\* 대형 재난에 대비)

### ○ 재난위험시설 해소계획 수립·시행(신설)

- ▶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재난위험이 높은 시설의 해소를 위하여
  - ➡ 장·단기계획 수립·시행(\* 위험시설의 체계적 관리)

### ○ 특정관리대상시설 조사기관 명확화

- ▶ 특정관리대상시설 조사기관을 “재난관리책임기관”에서
  - ➡ 개별법규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시설물 유지관리기관 포함

### ○ 시설물관리업무 중복성 해소

- ▶ 타 법규에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
  - ➡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점검과 병행 실시  
(\* 재난위험시설 : 월 1회이상, 중점관리시설 : 반기 1회이상)
- ▶ 타 법규에 시설물 관리카드를 작성·관리하고 있는 경우
  - ➡ 특정관리대상시설의 법정관리카드로 활용

### ○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대상 범위 등 정비

- ▶ 관리대상외 유형의 시설물 포함 및 대상범위 불명확
  - ➡ 관리대상외 유형의 시설물 제외 및 대상범위 구체화

### ○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·해제 고시방법 개선

- ▶ 대상시설을 지정·해제할 경우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
  - ➡ 인터넷(홈페이지)을 통한 고시방법 추가

## □ 지침 주요개정(안)

### ○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대폭 확대

- 시특별에 준하여 시설물등급을 지정·관리하고 있는 경우 10년이상 경과된 중규모이상 교량 등 주요시설물에 대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 관리

⇒ 대형재난 등에 대비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

종 전	변 경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상시설에 대하여 별표2 기준에 의한 시설별 상태평가를 실시하여</li> <li>- 구조 및 상태 등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재난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(A,B,C등급)은 “중점관리시설”로 지정</li> <li>- 긴급히 보수·보강하여야 하거나 사용 및 거주상의 제한을 요할 정도로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(D,E등급)은 “재난위험시설”로 지정</li> <li>- &lt;신 설&gt;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별표1 대상시설에 대하여 별표2 기준에 의한 시설별 상태평가를 실시하여</li> <li>- ..... &lt;생 략 &gt; .....</li> <li>- ..... &lt;생 략 &gt; .....</li> <li>※ 다만, 매년 정기적으로 “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”에 준하여 A~E등급으로 지정·관리하고 있는 <b>교량·터널</b>의 경우 별표1에 해당되는 <b>모든 시설에 대하여</b> A,B,C 등급은 “중점관리시설”, D,E등급은 “재난 위험시설”로 지정</li> </ul>

### ○ 재난위험시설 해소 장·단기 계획수립

- 재난위험시설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·단기계획을 수립·시행토록 개선

종 전	변 경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&lt;신설&gt;</li> <li>(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사항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장·단기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<b>세부사항</b>(년차별 투자계획, 재난위험해소계획, 단위 시설물별 계획 등) <b>마련</b></li> </ul>

○ 특정관리대상시설 조사기관 지정

- 개별법에 의거 권한을 위임받아 대상시설물을 실제 관리하고 있는 기관도 조사기관이 되도록 명시

종 전	변 경
- <신설> (시행령 제32조 제1항 사항)	○ 조사기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 또는 개별법규에 의거 시설물유지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실제 대상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유지관리기관으로 함

○ 기존의 안전점검 등을 정기점검으로 인정

- 중복점검을 배제하기 위하여 타 법규에 의한 안전점검과 병행 실시 가능토록 개선

종 전	변 경
○ 재난위험시설 : 매월 1회 이상 중점관리시설 : 반기 1회 이상 - <신 설>	○ ..... <생 략 > ..... ..... - 타 법규에 의해 특정관리대상시설이 포함된 정기안전점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병행 실시 가능

○ 관리카드 기존 서식 활용

- 법정관리카드에 준하는 서식을 작성 비치하고 있는 경우 기존 서식 활용토록 개선

종 전	변 경
○ 법정관리카드 서식에 따라 작성 비치	○ 법정관리카드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법정관리카드에 준하는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있는 경우 기존서식 활용 가능하며, 이때 반드시 “특정 관리대상시설”임을 명시

○ 특정관리대상시설 조사 및 지정대상 보완

- 소속·산하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시설물(건축물)로 정비 및 대상범위 등 보완

종 전	변 경	비 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침에 건설교통분야에 해당하지 않은 시설물(지자체 등의 소관시설) 포함</li> <li>○ 대상범위 불명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건설교통분야에 해당하지 않은 시설물(지자체 등의 소관시설) 제외</li> <li>○ 대상범위 구체화</li> </ul>	

○ 재난위험시설 지정·해제 고시 방법 개선

- 고시 방법에 인터넷 게시 추가

종 전	변 경	비 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재난위험시설(지역)을 지정·해제하였을 경우에는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재난위험시설(지역)을 지정·해제하였을 경우에는 공보 또는 게시판, 인터넷에 고시</li> </ul>	

【별표 1】

## 특정 관리 대상 시설(지역) 지정 대상

□ 시설물 분야

구 분		관리 기호	대 상 범 위	비 고
도로 및 철도	교 량	11	○ 연장 20m이상, 100m미만으로 10년이상 경과된 교량	
	터 널	12	○ 연장 1,000m미만이고 특별시·광역시에 속하지 않은 지역의 일반철도 터널	
	육 교	13	○ 설치된지 10년이상 경과된 시설	보도육교에 한함
	지 하 차 도	14	○ 연장 20m이상, 100m미만으로 설치된지 10년이상 경과된 시설	
시 설	축대·옹벽	16	○ 축조된지 10년이상 경과된 높이 5m· 연장 20m이상의 시설	건축물 부대시설 제외
	기타 부대시설	17	○ 기타 시설 유지·관리를 위한 부대시설 등	
기 타		70	○ 중점관리가 필요한 토목시설물	

(※ 항공분야 동종시설 등은 도로·철도시설에 준하여 적용)

□ 건축물 분야

구 분		관리 기호	대 상 범 위	비 고
공공청사 등		10	○ 다중이용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연면적 660㎡이상의 청사 및 업무용건축물	
공 동 주 택	아 파 트	21	○ 준공후 15년이상 경과된 주택	다세대주택 제외
	연립주택	22		
다 이 중 용 건 축 물	종합여객시설	33	○ 연면적 300㎡이상 철도역사, 공항터미널 등	
	위락·휴게시설	38	○ 연면적 300㎡이상 휴게소, 관망탑 등	
기 타 건 축 물	일반건축물	51	○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축물	
	옹벽·석축	52	○ 높이 5m, 연장 20m이상	
	기 타	53	○ 중점관리가 필요한 부대건축물	
위 험 물 시 설	가스취급시설	81	○ 충전소, 판매소, 제조소, 지역정압기	
	유독물취급시설	82	○ 유독물 보관·저장소	
	화학물질취급시설	83	○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공장	

※ 『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』 대상 시설물은 제외

【별표 2】

## 시설물 상태평가기준

등급	상 태	평가(조치)기준
A급	○ 현재는 문제점이 없으나 정기점검이 필요한 상태 ⇒ 안전시설	○ 이상이 없는 시설
B급	○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 ⇒ 간단한 보수정비 필요	○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시설
C급	○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⇒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시설 대체 필요	○ 보수·보강이 이행되어야 할 시설로서 현재 결함상태가 지속될 경우 주요부재의 결함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시설
D급	○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 ⇒ 긴급한 보수·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 판단 필요	○ 조속히 보수·보강하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시설이거나 현재의 결함상태가 지속되면 단면손실 등으로 기능상실 우려가 있는 시설 ○ 보수·보강 이행시까지 결함의 진행상태를 수치적 계측관리가 필요한 시설 ○ 결함사항의 진전이 우려되어 사용제한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한 시설
E급	○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 ⇒ 사용금지 및 개축 필요	○ 적정 유지보수 시기를 일실한 시설물로서 보수·보강하는 것보다 철거, 재가설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는 시설 ○ 철거, 재가설 전까지 재난조짐 상태의 수치적 계측관리가 필요한 시설 ○ 붕괴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 보강 등 응급 조치와 사용제한·금지조치가 필요한 시설